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1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 송옥주·임종성·서삼석

박 정・유동수・안호영

박용진 • 민병덕 • 박찬대

정춘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켜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우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해 해외취업사업과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·운영하고 있으나, 법 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.

이에 공단의 설립목적에 "글로벌 인재 양성"을 추가하여 공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,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 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(안 제1조, 제6조제6호).

또한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가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로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기 설치된 국외분사무소(EPS센터)에서조차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도 공단의 국외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외분사무 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7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"을 "숙련기술 장려 사업,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고용촉진"으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"제28조"를 "제28조 및 제6조제6호"로 한다.

제6조제6호 중 "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"을 "해외취업 지원, 글로벌 인재양성 등 고용촉진사업 및 해외통합 전산망 구축·운영"으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산업인	제1조(목적)
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	
평생학습 지원, 직업능력개발훈	
련의 실시, 자격검정, <u>숙련기술</u>	숙련기술
<u>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</u> 등에	<u>장려 사업, 글로벌 인재 양성</u>
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	<u> 및 고용촉진</u>
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	
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	
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	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4조(분사무소의 설치) 공단은	제4조(분사무소의 설치)
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	
국내외에 분사무소(分事務所)를	
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국외분	
사무소의 설치는 「외국인근로	
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	
<u>제28조</u> 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	제28조 및 제6조제6호
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	
한다.	
제6조(사업) 공단의 사업은 다음	제6조(사업)
각 호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- 6. <u>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</u> <u>사업</u>
- 7. ~ 11. (생 략)

- 6. <u>해외취업 지원, 글로벌 인재</u> 양성 등 고용촉진사업 및 해 외통합 전산망 구축·운영
 - 7. ~ 11. (현행과 같음)